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1552호
- 발 의 자 : 김태수 의원 외 찬성의원 11명
- 발의일자 : 2016년 11월 30일
- 회부일자 : 2016년 12월 1일

2.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의 임기와 위촉 해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례를 정비함.

3. 주요내용

-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8조)
- 위원의 위촉 해제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2)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15조제1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안 제7조제2항, 안 제10조제1항제1호, 안 제10조제1항제3호, 안 제19조, 안 제20조제2항)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첨부)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5. 검토의견

가. 개정안 개요

- 동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의 임기와 해촉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세부사항

- 서울시는 국어발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 시 주요 정책사업 명칭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국어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한 국어바르게쓰기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2016년 9월부터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2018년 8월까지 2년동안 활동할 계획임.

안 제8조(위원의 임기)에서 제7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서울시 시민소통 기획관으로써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해 위원회를 재직하도록 수정하고

<위원의 임기>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의 임기)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u>위원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제8조(위원의 임기)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u>제7조제2항제5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안 제8조의2에서 위원의 임기 만료 전 위촉 해제의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간 위원으로써 활동하지 않는 위원이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원들을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함.

다만 제8조의2 ‘해당위원을 위촉을’을 ‘해당위원의 위촉을’으로 하고 제1호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을 때’로 수정하는 것이 전체적인 맥락에 맞을 것으로 판단됨.

<위원의 위촉 해제>

현 행	개 정 안	수정의견
<신 설>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u>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u> <u>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u> <u>2.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u> <u>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u> <u>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u>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 ----- ----- ----- 해당 위원의 ----- ----- <u>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을 때</u> <u>2. (개정안과 같음)</u> <u>3. (개정안과 같음)</u> <u>4. (개정안과 같음)</u>

관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제명이 변경(2016.7.6. 개정)된 것을 반영하고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① 「 <u>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u> 」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문안은 한글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① 「 <u>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제12조제2항----- ----- ----- -----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단어를 쉽게 변경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p> <p>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u>호선하고</u>,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 6. (생 략)</p>	<p>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선출하고</u> ----- -----.</p> <p>1. ~ 6. (현행과 같음)</p>
<p>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 략)</p> <p>1.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청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p> <p>2. (생 략)</p> <p>3.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u>개의하고</u>, 출석위원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② (생 략)</p>	<p>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1. ----- <u>한 번</u> ----- -----.</p> <p>2. (현행과 같음)</p> <p>3. ----- ----- <u>시작하고</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9조(의견 청취)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u>강구하여</u> 시행하여야 한다.</p>	<p>제19조(의견 청취) ----- ----- ----- <u>마련하여</u> ----- -----.</p>
<p>제20조(교육) ① (생 략)</p> <p>② 시장은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u>강구하여야</u> 한다.</p> <p>③ (생 략)</p>	<p>제20조(교육)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마련하여야</u> ----- -----.</p> <p>③ (현행과 같음)</p>

다. 종합 의견

- 국어바르게쓰기 위원회의 임기와 위촉해제의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관계법령의 제명이 개정된 것을 반영하며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됨.

<붙임1>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위원 명단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주요 경력
1	 남영신 (68)	국어단체연합회장	국어문화운동본부 회장
2	 이건범 (51)	한글문화연대 상임대표	서울고등법원 시민사법 위원
3	 민병곤 (49)	서울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학과장
4	 김혜림 (53)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번역학과 교수	이화여대 통역 번역 연구소 소장
5	 김찬석 (53)	청주대학교 교수	제17대 한국PR학회 회장
6	 김정숙 (55)	세종학당재단 이사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7	 최혜원 (47)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장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전)
8	 강재형 (54)	문화방송 미디어연구소장	한국아나운서협회 회장
9	 정수연 (52)	KBS 방송작가	MBC, SBS 방송작가
10	 김보미 (33)	경향신문 기자	경향신문 사회부 기자
11	 김문수 (48)	서울특별시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	성북구청장 비서실장(전)
12	 엄규숙 (54)	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13	 김태균 (47)	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14	 강태웅 (53)	행정국장	관광국장(전)
15	 서정협 (51)	시민소통기획관	서울시장 비서실장(전)

국어바르게쓰기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위원회 현황

○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제6조 ~ 제8조

○ 구성인원 : 15명 (단위 : 명)

구 분	시민단체	교 수	연구기관	전문가	시의원	내부위원
15	2	3	2	3	1	4

○ 임 기 : 2년(위촉기간 : 2016. 9월 ~ 2018. 8월), 연임가능

○ 하 는 일

-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
- 시 주요 정책사업 명칭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어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 실적

연번	개최일자	회 의 내 용
1	2014. 9. 29.	행정용어 순화어 1건 선정, 자문 3건(사업명 등)
2	2014.12.16.	행정용어 순화어 8건 선정, 자문1건(국어발전 기본계획 수립)
3	2015. 3. 30.	행정용어 순화어 23건 선정
4	2015. 6. 3.	행정용어 순화어 20건 선정, 자문1건(국어발전 기본계획 수립)
5	2015. 9. 23.	자문 1건(국어발전 기본계획 수립)
6	2015.11.13.	자문 1건(서울브랜드)
7	2016. 3. 29.	행정용어 순화어 9건 선정, 자문2건(사업명)
8	2016. 6. 17.	행정용어 순화어 2건 선정(서면심의)

※ 행정용어 순화 실적 : 63건(2008년 이후 345건)